

2014년

자연재해 피해주민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지원종합안내서



소방방재청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CONTENTS

- 1 . . .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 지원 / 1
- 2 . . . 주택피해자 등에 대한 의연금 지원 / 3
- 3 . . . 이재민 구호물품 지원 / 4
- 4 . . . 자연재난 피해주민 간접지원
 1. 피해주민 간접지원 월스톱 서비스 제공 / 5
 2. 사유시설 피해 복구 용자금 지원 / 6
 3. 재해농·어·임가 경영자금 지원 / 7
 4. 재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8
 5. 재해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 9
 6. 국세·지방세 등 감면 및 징수유예 / 10
 7. 건강보험료 경감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 11
 8.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감면 / 12
- 5 . . . 풍수해 보험 / 13
- 6 . . . 농어업재해보험 / 14
- 7 . . . 재난경험자 심리지원 / 15
- 8 . . . Q&A / 17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지원 (재난지원금)

근거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원 대상·금액

- ① 세대주·세대원 중 사망·실종자 및 부상자
 - 사망·실종 : 세대주 1,000만원, 세대원 500만원
 - 부상 : 세대주 500만원, 세대원 250만원
- ② 주택피해자(전파·유실, 반파, 침수피해)
 - 주택전파·유실 900만원, 반파 450만원, 침수 100만원
 - ※ 주택피해자는 구호비를 추가 지원(1인당 전파 420천원, 반파 210천원, 침수 49천원)
- ③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 피해자
 - ※ 주생계수단 : 그 수입액이 당해 가구 총수입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
 - 지원금액은 개인별·농가별 피해규모에 따라 다름
 - 총 소유량의 50% 이상 피해를 입은 농·어가 등은 생계지원비 및 학자금 추가 지원

신청방법

- 피해신고서를 작성, 10일 이내, 관할 읍·면·동사무소, 시·군·구 담당부서에 제출

지원절차



피해신고요령

신고 기간과 대상은?

- 피해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어선, 인삼재배시설, 수산증양식 시설, 농경지, 가축, 어패류, 농작물
- 농·임·어·축산업 등을 주생계수단으로 하는 주민
※ 주 생계수단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종사자는 제외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 읍면동과 리·통장집에 비치된 신고서 활용
- 피해종류 및 규모와 수량을 정확히 조사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족수 등 기입
-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 기입
※ 신용불량 등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위임 지급 가능
-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www.safekorea.go.kr)



제출 장소 및 접수는?

- 피해소재지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 이장, 통장에게 전달 접수 가능

피해신고서 작성 제출이 어려운 분은?

- 부재시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노약자 등은 친인척 및 리·통장의 도움을 받아 작성 신고
- 피해신고에 문의 사항은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2

주택피해자 등에 대한 의연금 지원

근거법령

- 「재해구호법」 제26조
- 「의연금품 관리·운용 규정」

지원 대상·금액(국고지원대상 재해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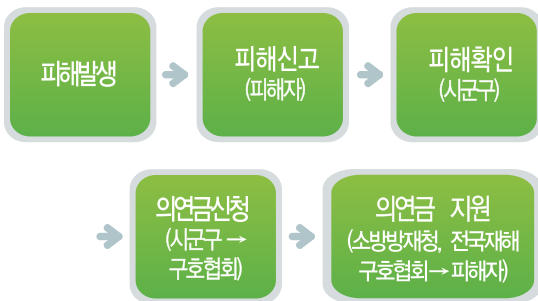
구 분	의연금(만원)	비 고
○ 사망·실종자(1인)		
- 세대주	최대 1,000	
- 세대원	최대 500	
○ 부상자(1인)		
- 세대주	최대 500	
- 세대원	최대 250	
○ 주생계수단 50%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세대)	최대 100	
○ 주택침수(세대)	최대 100	
○ 주택파손(동)		
- 전파·유실	최대 500	
- 반파	최대 250	

※ 배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의연금 지원 금액 결정

신청방법

- 피해자의 별도 신청 없이 소방방재청, 자치단체 및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연계하여 지급

지원절차



3

이재민 구호물품지원

응급구호세트(남) : 1인 기준

구분	담요	칫솔	세면비누	수건	화장지	베개	손거울,빗
규격	200cm×150cm, 1.3kg 200cm×150cm, 0.7kg	일반용	100g	80cm×40cm	미용티슈	PVC 38cm× 28cm×10cm	미니
수량	2장	1개	1개	2장	1개	1개	1조

구분	볼펜	메모지	손전등	우의	면장갑	간소복	속내의	면도기	양말
규격	0.7mm 유성	10cm×4.8cm 30매	자가발전 핸디형	경량	반코팅	면폴리 혼방	면	1회용	면
수량	1개	1개	1개	1개	1켤레	1벌	1벌	1개	1켤레
개별구호물품	치약(130g), 물티슈(60매), 생수(1.0ℓ) 1병								

응급구호세트(여) : 1인 기준

구분	담요	칫솔	세면비누	수건	화장지	베개	손거울,빗
규격	200cm×150cm, 1.3kg 200cm×150cm, 0.7kg	일반용	100g	80cm×40cm	미용티슈	PVC 38cm× 28cm×10cm	미니
수량	2장	1개	1개	2장	1개	1개	1조

구분	볼펜	메모지	손전등	우의	면장갑	간소복	속내의	생리대	양말
규격	0.7mm 유성	10cm×4.8cm 30매	자가발전 핸디형	경량	반코팅	면폴리 혼방	면	일반중형	면
수량	1개	1개	1개	1개	1켤레	1벌	1벌	1조	1켤레
개별구호물품	치약(130g), 물티슈(60매), 생수(1.0ℓ) 1병								

취사구호세트 : 1세대 4명 기준

구분	가스렌지	코펠	수저	세탁비누	세탁세제	주방세제	고무장갑	수세미	다용도가방
규격	휴대용	4인용	sts	230g	1kg	500g	고급형	부직포	PE타포린
수량	1개	1세트	4벌	1개	1개	1통	1켤레	2개	1개
개별구호물품	1세대당 쌀(10kg) 1포, 부식류(고추장, 간장, 된장, 김치 등 기타 부식류), 부탄가스 4개, 살균·표백제 1개								

4

자연재난 피해주민 간접지원

1. 피해주민 간접지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

원스톱 서비스란 ?

-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시·군·구(읍·면·동)에 피해신고만 하면 '세제·용자 등의 간접지원' 까지 별도의 방문 신청이나 구비서류 없이 간소화하여 지원하는 서비스

근거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12조
- 간접지원 서비스별 개별 법령 및 규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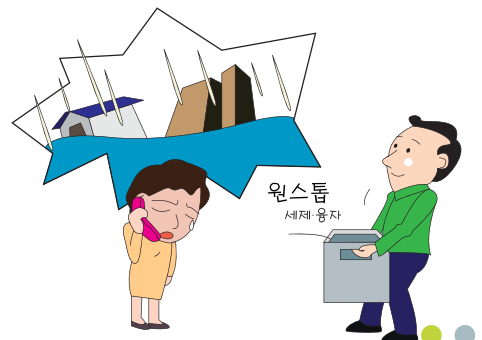
지원내용

- 복구자금 용자
- 국세 납세유예 및 지방세 감면
- 건강보험료 경감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감면

지원절차



※ 복구자금 용자는 금융기관에서 최종 처리



4

2. 사유시설 피해 복구 용자금 지원

근거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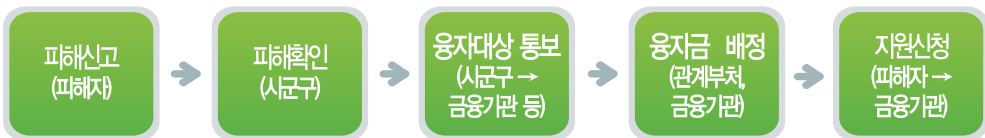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용자 대상 및 조건

소관부처	용자시설	취급은행	상환조건	
			상환기간	이율
농림축산식품부	농경지, 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시설, 가축입식 등	농협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1.5% (고정금리)
해양수산부	어선, 어망어구 수산증양식 시설, 수산생물	수협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1.5% (고정금리)
국토교통부	주택	농협·기업·신한 등	3년 거치 17년 상환	연리 3% (변동금리)
산림청	대추 비가림 시설 표고버섯 재배사	산림조합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1.5% (고정금리)

※ 재해복구(주택, 비닐하우스) 용자금 지원시 풍수해보험·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독려
(상환기간까지 유지)

지원절차



4

3. 재해농·어·임가 경영자금 지원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63조, 「축산법」 제3조, 「농축산 경영자금 운용 규정」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63조, 「수산업법」 제86조 「영어자금 운용요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 의한 재해피해 농·어·임가



지원조건 및 금액

소관부처	지출대상	상환기간	이율
농림축산식품부	피해규모가 30~50% 미만인 경우 50% 이상인 경우 * 다만, 재해로 인하여 2년 이상 정상적인 과실생산이 어려운 농가는 3년 연장가능	1년간 2년간 (1년 연장 가능)	연 3.0%
해양수산부	자담분(재해대책본부 심의·확정)+피해복구비의 20% 이내 영어자금 소요액의 15% 이내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사실 확인을 받은자)	1년 (1회 연장 가능)	연 3.0%
산림청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용자 부담률 이외 재해피해 규모를 감안하여 추가 지원여부 결정	2년 거치, 3년 상환	연 3.0%

지원절차



4

4. 재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근거법령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

지원대상

- 자연재해로 직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자연재해로 인한 건축물, 생산설비, 원재료, 완제품 피해에 한함

지원내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2.7% 고정금리
※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 특별보증(90% 보증, 수수료 0.5%)

지원절차

- 피해신고 : 재해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피해신고 후 「피해사실확인서·재해확인증」 발급
- 대출신청 : 확인서(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방문, 상담 및 대출 신청
※ 피해기업에서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희망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재해특례 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금리로 대출 가능



4

5. 재해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근거법령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

지원대상

- 자연재해로 직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자연재해로 인한 건축물, 생산설비, 원재료, 완제품 피해에 한함

용자조건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7천만원
- 대출금리 : 연 2.7% 고정금리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특별보증(100% 보증, 수수료 0.5%)

지원절차

- 피해신고 : 재해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피해신고 후 「피해사실확인서·재해확인증」 발급
- 보증신청 : 확인서(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방문, 상담 및 대출 신청
- 대출신청 : 신용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지참하고 주거래은행을 방문하여 대출 신청
※ 담보가 있을 경우, 보증기관의 보증서없이 주거래은행 방문, 대출 신청



4

6. 국제 납세유예 및 지방세 등 감면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7조, 제85조의 2
- 「지방세법」 제9조의 2, 제27조의 2, 제26조의 2, 제41조, 제10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제92조



세정지원 범위 및 절차

유형	세목 등	지원 범위 및 절차
면제	가산세(지방세)	가산세 부과 면제(신청)
기한연장	신고기한	부가가치세·소득세(국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등(신청)
	신청기한	물납, 분납신청 등(신청)
	청구기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신청)
징수유예 등	고지유예	납기개시전에 피해발생으로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신청, 직권)
	분할고지	납기개시전에 피해발생으로 세액을 분할 고지하는 경우(신청, 직권)
	징수유예	이미 고지한 국세,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피해발생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신청, 직권)
	체납처분유예	국세, 지방세 등 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피해발생으로 체납처분을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신청, 직권)
비과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건축물·선박 등 소실·파손 2년 이내 소실된 건축물 등을 복구하기 위해 신축·개축·대수선하는 경우(신청)
감면	지방세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감면세목, 감면범위를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감면(신청, 직권)
	취득세 재산세 등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등으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해당 지방의회 의결)
	자동차세	자동차 회수불가 사용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신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복구를 위한 부지 조성에 필요한 지적측량시 수수료 50% 감면(신청)

- ※ 주택피해로 세금감면 수혜자는 풍수해보험에 가입·유지 권장
- ※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시·군·구 세무담당부서에 문의

7. 건강보험료 경감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재난경감)
- 「국민연금법」 제92조

대상·범위

- 건강보험료 재난경감
 -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자연재난지역
 - 인적피해와 물적피해 동시 발생시 6개월 경감(하나만 발생시 3개월)
- 피해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 30~50% 경감



〈건강보험료 경감률〉

구 분	적용기준		
재난등급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	1~5	6~55	56~100
경감률	50%	40~49%	30~39%

- ※ 건강보험료 경감은 월보험료 최대 50% 초과할 수 없음
- ※ 소상공인은 재난등급에 따라 상응하는 피해금액에 따라 경감률 적용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보조 또는 지원대상이 된 자
- 피해발생월로부터 최장 12개월까지 납부 예외

지원절차

- 건강보험료 경감
 - 별도의 신청접수 없이 건보공단에서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로 처리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 별도의 신청없이 국민연금공단의 유선안내에 따라 신청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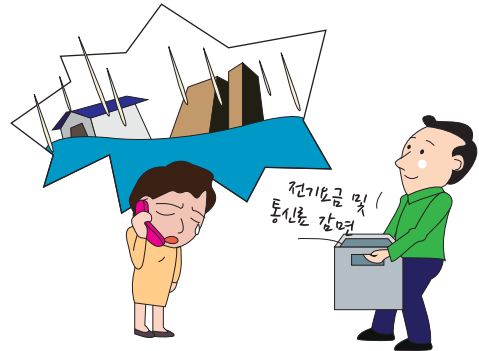
8.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감면

근거법령

- 「특별재난지역 지원기준」 (한국전력공사 내부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대상·범위

- 전기요금 면제 및 감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의 규정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전력



대 상	지원 범위
멸실된 건축물(주택 등)	1개월분 전기요금 면제
침수 및 파손 건축물	1개월분 전기요금의 50% 감면(주택용은 100%감면)
전기요금 납기연장	멸실, 침수 및 파손건축물에 대해 1개월 납기연장
이재민대피장소 6개월 요금 감면(지자체가 인정하는 시설물에 한함) 건축물 멸실 및 파손으로 인한 전기 재사용신청시 시설부담금 면제	

- 통신요금 감면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이동통신요금 감면
 - 1~90등급 피해주민에 대해 세대당 1회선 1개월 최대 12,500원
 - ※ 감면내용(이동전화 기본료 일부감면 등)은 개인별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지원절차

- 전기요금 경감
 - 별도의 신청없이 지자체에서 피해내용을 관할 한전지사에 통보하면 지자체·한전 협의 및 피해사실 확인 후 지원
- 통신요금 감면
 - 별도의 신청없이 소방방재청에서 이동통신3사(SKT, KT, LGU+)에 지원대상 통보, 감면 지원
 - ※ 상기 내용은 관계기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풍수해 보험

근거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 「풍수해보험법」 제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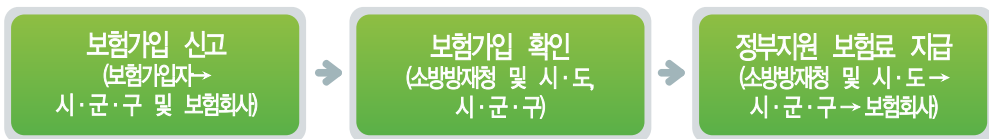
지원 대상 · 금액

- 대상재해 : 태풍, 호우, 홍수,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 지원대상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중 풍수해보험 가입자
- 지원금액 : 총 보험료의 55~86%를 지원
 - ※ 일반인 55~62%, 차상위계층 76%, 기초생활수급자 86%
- 지원주체 : 소방방재청 및 시·도, 시·군·구

신청방법

- 보험가입 대상 시설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및 읍·면·동사무소 또는 보험회사
 【동부화재(주), 삼성화재(주), 현대해상(주),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 보험가입 서류(청약서, 가입동의서) 제출
 - ※ 가입문의 전화 : 02 - 2100 - 5103~7

보험가입 및 지원절차



풍수해 피해발생시 보험금 지급 절차



6

농어업재해 보험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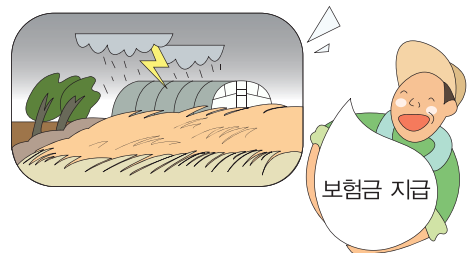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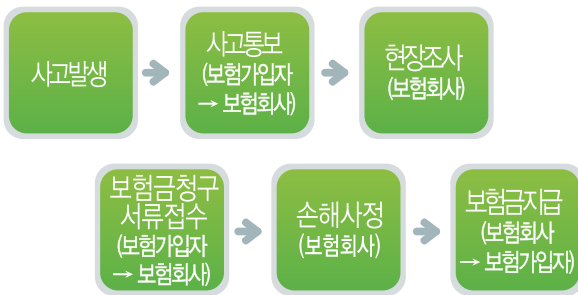
지원 대상 · 금액

- 대상재해 : 태풍, 호우, 우박 등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
- 지원대상 : 보험목적물(농작물, 가축, 양식수산물) 가입자
- 지원금액 : 총 보험료의 50% 지원
- 지원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및 시 · 도, 시 · 군 · 구

신청방법

- 보험가입 대상시설물 소재지 관할 농협(농작물 · 가축보험), 수협(양식 · 수산물보험), LIG 컨소시엄(가축보험)에 보험가입 신고서 제출
- ※ 가입문의 전화 : 농협 1644 - 8900, LIG 02 - 6900 - 3427, 수협 02 - 2240 - 2976

농어업재해 피해발생시 보험금 지급 절차



재난경험자 심리지원

근거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2

지원 대상

- 재난으로 인한 신체 · 재산적 피해를 입은 자(간접경험자 포함)
※ 유가족, 동행인 등 재난목격자, 수습복구활동 참여자까지 포함

지원 내용

- 재난심리지원센터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정신적 · 심리적 충격을 완화함으로써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행을 예방
※ 정신 · 신경 의학적 치료분야는 제외

신청방법

- 인근 재난심리지원센터로 전화, 방문, 온라인으로 상담신청
※ 시 · 도 재난심리지원센터, 「심리상담 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dmhs.go.kr> 방문

지원절차



재난심리지원센터 찾기

시·도	지정 기관	전화번호	주 소
서울	서울특별시 정신보건센터	1577-0199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06 일양빌딩 별관 7층
부산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051)890-6823	부산광역시 진구 개금동 633-165
대구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053)423-4926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2가 101번지
인천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032)810-1341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외로 220
광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062)521-0546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226-4번지
대전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지사	(042)220-0145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32-1
울산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052)210-9513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 10길 25
세종	세종시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044)864-0199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건강길 16
경기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센터	(031)212-0436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송로 245길 69 (경기도의료원 2층)
강원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033)248-1733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1 다산관 10526호
충북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043)262-7114	충북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52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319-1
충남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간호학과	(041)550-1293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전북	예수대학교 재난심리지원센터	(063)230-779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83
전남	동신대학교 심리상담학과	(061)330-2875	전남 나주시 건재로 185
경북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053)252-9846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 16
경남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055)278-2733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26
제주	제주한라병원	(064)740-543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1963-2 한라병원 3층 임상심리연구소

※ 소방방재청(02-2100-5225) 및 시·도 재난관리부서로 문의 가능

피해신고 기간은?

- 피해가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장기여행·입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피해주민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면 재난지원금 등을 빨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 시설피해 등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 제출
- 인명피해는 주민등록 주소지에, 어선은 선적지에 신고합니다.

피해신고 제외 대상은 무엇인지?

- 반파 미만의 주택, 어선, 축사 등의 경미한 시설피해
- 주택 침수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지원 제외
※ 수도권 밖의 읍·면지역 소유 상속·귀농주택은 지원 가능
- 상가 및 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비닐하우스내 부대시설
- 무허가시설, 비규격 비닐하우스, 수산증·양식시설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 등 입니다.
- 다만, 주택은 허가 유무에 관계없이 피해신고 대상입니다.
※ 무허가 주택피해시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복구할 경우에는 지원함





소방방재청

발행처 _ 소방방재청 복구지원과 02)2100-5434

인쇄 _ 새롬출판사 02)2272-3662

※책자의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